##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38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김승원·이병진·이건태

임호선 · 이광희 · 이원택

서영교 • 박해철 • 권칠승

서삼석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,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##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6항 전단 중 "75세"를 "70세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의료지원) ① ~ ⑤ (생	제17조(의료지원) ① ~ ⑤ (현행
략)	과 같음)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<u>75세</u>	⑥ <u>70세</u>
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	
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	
은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	
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	
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	
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	
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	
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	
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	
한다.	
⑦・⑧ (생 략)	⑦·⑧ (현행과 같음)